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4드단○○○ 혼인의 무효

원 고 신AA

피 고 정BB

변 론 종 결 2014. 6. 24.

판 결 선 고 2014. 7. 8.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3. 6.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혼인 무효에 관한 법리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이루어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815조 제1호 참조).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부터 알고 지냈는데, 2004. 11. 3.부터 동일한 주소(부산광역시 동래구)로 주민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는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해 왔는데, 피고는 그 동거기간 중에 원고의 남자관계에 대한 의심 또는 금전문제 등으로 인한 다툼이 있자,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칼이나 가위를 들이대며 원고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가 2009년 1월 중순경 다시 술에 만취하여 칼을 들고 위협을 하자, 원고는 피고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피고와 동거하던 집을 나와 언니가 살고 있던 안동으로 갔다.

라. 피고는 2009. 2. 5.부터 같은 달 11.까지 원고에게 '연락해 달라.', '한번만 용서해

달라.', '원고 없이는 살아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그래도 원고가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자, 피고는 2009. 3. 6.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하고, 당시 제출된 혼인신고서를 '이 사건 혼인신고서'라 한다)를 하였다.

바. 이 사건 혼인신고서는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되었는데 육안으로 보아도 원고의 필체가 아니다.

사. 원고는 2009. 3. 12. 부산에서 안동으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같은 해 1. 27.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는 2009년 1월 중순경부터는 계속 따로 살고 있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혼인 무효에 관한 주장을 전혀 다투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2009년 1월 중순경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그 무렵 피고의 폭언 등을 피하여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혼인의 의사를 철회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혼인의 의사가 철회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혼인신고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무효이고, 혼인신고의 일방 당사자인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옥곤